

2021학년도

신입학 추가모집 전형 요강



2020. 12.

세화고등학교
(www.sehwa.hs.kr)



2021학년도 세화고등학교 신입학 추가모집 전형 요강

1 모집 인원 (남 12학급)

모집 구분	모집 전형	모집 인원	비 고
정원 내	일반전형	-	일반전형은 모집하지 않음
	사회통합전형	79명	
	소 계(A)	79명	
정원 외	보훈자자녀전형	10명	
	고입특례대상자전형	5명	
	소 계(B)	15명	
총 모집인원(A+B)		94명	

- 1) 지원자는 사회통합전형, 보훈자자녀전형, 고입특례대상자전형 중 하나의 전형에만 지원할 수 있음.
- 2) '정원 외' 보훈자자녀전형은 '국가보훈대상자' 중 '교육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하며, 교육지원대상자가 아닌 기타 '국가보훈대상자'는 '정원 내' 사회통합전형 중 '기회균등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음.

2 지원 자격

가. 공통자격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서울특별시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 2) 중학교 졸업자로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 3)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로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 4) 다른 시도 소재 특성화중학교 및 전국단위 모집 자율학교로 지정된 중학교 졸업예정자 중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 위 '2)~4)'항의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원서 접수일 현재 '전 가족이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뜻한다.

- 5) 자율형 사립고가 없는 시·도 중 서울특별시교육감과 협의한 지역(경남, 제주, 세종) 소재 중학교 졸업자(학력 인정자 포함) 및 졸업예정자

나. 전형 유형별 지원 자격 : '가'항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 해당 전형 유형별 지원 자격을 갖춘 자

전형 구분		유형별 지원 자격		
정원내	사회통합전형	기회균등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법정차상위대상자로서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상위 자활 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 연금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로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가구의 구성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구 차상위계층)로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한 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구 차차상위계층)로 '교육비지원확인서'를 제출한 자 	※증명서 및 확인서 제출
		60% 우선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법정차상위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50% 및 60%이하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갑작스런 사유로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중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증명서 및 확인서, 증빙서류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로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제출자 	보훈자 자녀
	사회다양성전형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14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도서·벽지가 있는 시·도의 경우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의 거주자로서 도서·벽지의 중학교 졸업(예정)자 ○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 자녀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애 등급 1급~3급)의 자녀 ○ 순직 군경, 순직 공무원, 순직 교원의 자녀 	※2020년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60% 이하
	2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정 자녀 ○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자녀 ○ 환경미화원의 자녀(시·도 또는 군·구 소속 환경미화원) ○ 군인(15년 이상 재직 중인 준·부사관 이하) 자녀 ○ 경찰(15년 이상 재직 중인 경위 이하) 자녀 ○ 소방공무원(15년 이상 재직 중인 소방위 이하) 자녀 		
정원외	보훈자 자녀 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로 통보되거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자 		
	고입특례대상자 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선정되어 통보된 자 		

※ 사회다양성전형은 2020년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60% 이하 가정의 자녀에 한해 지원 가능

참고 사항

1. 사회통합전형 중 『기회균등전형』

가. 기회균등전형의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 한부모가족)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됨. 동법 제4조제2호에 따른 사회다양성 전형의 한부모 가정(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자녀와는 구분

나. 기회균등전형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및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증빙 서류

- 1)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구, 차상위계층) :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제출
- 2)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구, 차차상위계층) : 교육비지원확인서 제출

※ 위 증명서(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회통합전형에 응시할 수 없음

다. 학교장 추천대상자 추천 요건

- 1)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가 매우 곤란한 경우(실업급여 수혜 가정 등)
- 2) 가계 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가 매우 곤란한 경우
- 3) 부양의무자의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거나, 생계가 매우 곤란한 경우
- 4)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로 폐업·휴업 등으로 생계가 매우 곤란한 경우

라. 기회균등전형 보호자 자녀의 조건인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되는 지원 대상

-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3조
-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안내 사항

1 2021학년도 고입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교육비지원 관련 안내
 2021학년도 사회통합전형 시 적용된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등의 기준은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과는 별개임 ※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2021학년도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아님

2. 사회통합전형 중 『사회다양성전형』

가. 사회다양성전형 공통사항 : 2020년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60% 이하 가정의 자녀에 한해 지원 가능

- 1) 지역 가입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함.
- 2) 직장 가입자 및 혼합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과 재산세 납부금액(연간)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6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및 재산세 납부금액 기준표〕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단위: 원)			재산세납부금액 (단위: 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160,546	160,865	162,883	538,050
3인	208,444	219,531	212,215	856,320
4인	253,956	274,444	260,770	1,193,760
5인	311,116	333,411	326,561	1,530,960
6인	368,580	393,349	402,261	1,868,400
7인	402,261	426,790	437,059	2,207,760
8인	471,545	495,914	519,517	2,546,880
9인	519,517	544,044	602,065	2,886,000
10인	602,065	617,910	767,816	3,225,36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산정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건강보험료, 재산세 확인 시 부모(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정의 경우 친부 및 친모) 모두 확인·합산하여 제도 도입 취지에 맞는 적격자 추천 (**참고자료1**, **참고자료2** 참고)

나. 다문화가정

- 1) 결혼이민자(국적법에 따른 귀화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단,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을 가진 친부(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 2)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되었더라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게 지원 자격을 인정함

다.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보장시설수급권자)는 기회균등전형으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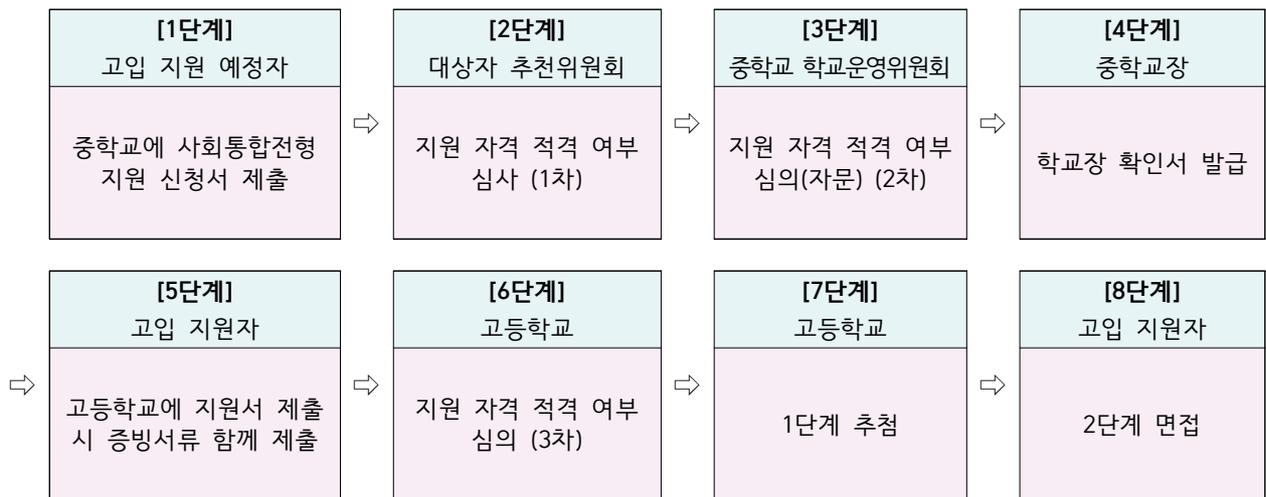
라.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애 등급 1급~3급)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의 개정으로 '장애 1~3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2019.7.1.부터 용어 변경

마.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자녀 : 자녀 모두 지원 가능(지원 가능 자녀수 제한 없음)하며, 학교별 선발 인원은 사회통합전형 모집 정원의 30% 이내로 제한함

3. 고입특례대상자(정원 외)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구 분	자 격 요 건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제2호 가목)	국내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제2호 나목)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외국인 학생 (제2호 다목)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북한이탈주민 등 (제3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하여 졸업한 자	

4. 사회통합전형 지원자는 다음과 같이 지원 자격에 대한 심의를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중복 실시함.



※ 기회균등전형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및 보호자 자녀, 기준 중위소득 50%~60%이하 대상자로서 증명서(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3단계] 심의(자문) 제외 가능

※ 중학교에서 위 [4단계]까지의 절차에 따라 사회통합전형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지원자도 지원 자격 여부를 본교에서 재심사하며, 그 결과에 따라 탈락될 수 있음

3 제출 서류

가. 제출 서류

- 1) 제출 시기: 2021. 1. 14.(목) ~ 2021. 1. 15.(금) ※ 업무시간 09:00~17:00
 2) 제출 서류

대상		유형별 제출 서류				
모든 지원자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원서 1부 (본 요강 7쪽에 있는 서식을 출력하여 중학교장 확인(직인 날인)) ○ 접수증 1부 (붙임4)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붙임5) ○ 주민등록등본 1부(단, 일반전형 지원자 중 서울특별시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는 제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 외국학교를 졸업한 경우는 외국학교의 학력을 인증할 수 있는 각종 서류 ※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관할 재외 한국 영사관(대사관)의 공증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이하 "검정고시 합격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합격증 사본[합격증 사본의 경우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원본대조필 확인] 1부 				
사회통합 전형 공통	사회 통합 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학년도 고입(사회통합·보호자 자녀·특례대상자) 전형 학교장 확인서 1부(붙임1) ○ 2021학년도 고등학교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 1부(붙임2) ○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기회 균등 전형	60% 우선 선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수급자증명서(구청, 동주민센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1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구청, 동주민센터) 1부	
				법정차상위대상자	차상위자활 대상자	자활급여 대상자 확인서(구청, 동주민센터) 1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1부
					차상위장애 수당대상자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구청, 동주민센터) 1부
					차상위장애 연금대상자	장애연금 대상자 확인서(구청, 동주민센터) 1부
		차상위계층확 인서 발급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구청, 동주민센터) 1부			
		기준중위소득 50% 또는 60% 이하,	50%이하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구청, 동주민센터) 1부		
		60% 이하,	60% 이하	교육비지원확인서(학교) 1부		
학교장 추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학년도 고입 기회균등전형 중 '학교장 추천자' 유형 학교장 추천서 1부(붙임3)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 자료 1부 (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으로 영수증, 고지서, 납부확인서 중 택 1) • 경제적 형편이 곤란함을 증빙하는 기타 제반 서류(해당 중학교장 직인으로 원본대조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내역서(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채권 압류 통지서, 법원 파산 결정문 사본, 폐업 확인서, 급여 명세서, 병원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등 -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가출, 연락 두절 기타 가정형편으로 부모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장 추천서」 또는 「자기 확인서」에 동 사실을 명기 - 어느 한 가지 서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재산세 과세 증명 등을 받아 종합적으로 판단 				
보호자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호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호대상자 확인원(관할 보호지청) 1부 				

대상		유형별 제출 서류		
사회 통합 전형	사회 다양성 전형	공통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160% 이하)	지역건강보험 가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1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 자료 1부 (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으로 영수증, 고지서, 납부확인서 중 택 1)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혼합(지역+직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1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 자료 1부 (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으로 영수증, 고지서, 납부확인서 중 택 1) 재산세(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1부 ※ 반드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전국)'으로 발급받아 제출(동주민센터 방문 발급, 온라인 발급 불가)
		1순위	다문화가정의 자녀	• 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1부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통지서 사본(원본대조필) 1부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 아동보육시설 재원증명서 1부 ※ 만18세 미만에 한함
			도시·벽지의 중학교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 1부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의 자녀	• 사실 관계 확인서 (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등) 1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원본대조필) 1부 ※ 2019년7월1일 이전 발급 장애인 등록증: 장애 1~3급
		2순위	순직 군경·교원·공무원의 자녀	• 순직 군경·교원·공무원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한부모가정 자녀	• 추가서류 필요 없음(공통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자녀	• 추가서류 필요 없음(공통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 입양으로 인한 다자녀가정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환경미화원의 자녀(사도 또는 군·구 소속 환경미화원)	• 재직증명서 1부			
군인 자녀(준부사관 이하)	• 재직증명서 1부 • 15년 이상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			
경찰 자녀(경위 이하)				
	소방공무원 자녀(소방위 이하)			
보훈자자녀 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학년도 고입(사회통합·보훈자 자녀·특례대상자) 전형 학교장 확인서 1부(붙임1) ○ 2021학년도 고등학교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 1부(붙임2)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관할 보훈지청) 1부 ※ 국가보훈처에서 교육지원대상자로 지정하여 통보된 자는 증명서 제출 불필요 			
고입특례 대상자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학년도 고입(사회통합·보훈자 자녀·특례대상자) 전형 학교장 확인서 1부(붙임1) ○ 2021학년도 고등학교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 1부(붙임2) ○ 특례 입학 대상 확인서(해당 중학교 발급) 1부 : 경남, 제주 및 세종 출신 지원자만 제출 			

※ 증빙서류는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발급한 서류에 한함.(별도의 유효기간이 설정된 서류는 제외)

※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함.

4 전형 일정 및 원서 접수

가. 전형 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유의 사항
원서접수	2021. 1. 14.(목) ~ 1. 15.(금)	본교 2층 접수처	업무시간 09:00 ~ 17:00
합격자 발표	2021. 1. 20.(수)	본교 홈페이지	접수 결과 추첨이 필요한 경우, 별도 안내함
등록금 납부 기간	2021. 1. 26.(화) ~ 1. 28.(목)	각 은행	

나. 원서 교부 및 접수

1) 입학원서: 다음 장에 있는 서식을 출력하여 자필로 작성한 후 중학교장 날인을 받아 제출.

2) 접수 절차

- ① 입학원서를 비롯한 제출서류 일체를 출력·작성하여 준비함.
(담임교사·중학교장 등의 날인이 필요한 서류는 날인이 빠짐없이 되어 있어야 함.)
- ② 준비한 서류 일체를 본교에 방문하여 제출함.
(제출처: 2층 중앙 교무실. 우편접수 불가)

※ 제출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할 모든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하므로, 반드시 원서 접수 전에 지원 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바람. 특히 사회통합 전형, 보훈자자녀전형, 고입특례대상자전형의 경우 지원 자격이 충족되지 않으면 서류 제출 후에도 불합격 처리함.

5 전형 방법 및 사정 기준

가. 사회통합전형

1) 순위에 따른 단계별 전형 실시

순위에 따른 단계별 전형

- 1단계 : 기회균등전형 대상자를 사회통합전형 전체 정원(84명)의 60%까지 우선 선발함(추첨).
- 2단계 : 1단계 탈락자와 사회다양성전형 1순위 대상자 중에서 선발함(추첨).
- 3단계 : 2단계 미충원 시에 사회다양성전형 2순위 대상자 중에서 선발함(추첨).

- ※ 사회통합전형 순위별 유형은 지원 자격 참조
- ※ 교육지원대상자(정원 외)가 아닌 “국가보훈대상자”는 기회균등전형으로 타 유형의 기회균등전형 대상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선발함.
- ※ 다자녀(3인 이상)가정 자녀 선발 인원은 **사회통합전형 전체 정원(84명)의 30% 이내**로 함.

나. 보훈자자녀전형, 고입특례대상자전형: 추첨으로 선발함.

6 합격자 배제 조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을 배제한다.

- 가. 제출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 나. 전기고(영재학교 제외) 합격자, 타 자사고나 외고·국제고 지원자가 본교에 지원하는 경우 등 이중으로 지원하는 자 ※ 후기고 불합격자는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있음.

7 합격자 발표

- 가. 합격자 발표: 2021. 1. 20.(수) 본교 홈페이지
 - 나. 합격자 예비소집: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지
 - 다. 합격자 등록금 납부 기간 : 2021. 1. 26.(화) ~ 2021. 1. 28.(목)
- ※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8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지원

가. 교육비 지원

1) 2021학년도 신입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은 2021년에 시행되는 「2021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기본 계획」에 따라 지원함.

※ 단, 실제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 등은 입학 후 변경될 수 있음.

2) 반드시 교육비 지원 신청 기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야 하며,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비 지원 여부가 결정됨

○ 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하였더라도 소득·재산 조사 결과가 지원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 불가함.

3) 참고: 「2020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기본 계획」 안내

○ 학비 지원 : 법정 저소득 자격 유무 및 입학전형 유형에 따라 지원내용 상이

구 분	지원 기준 및 지원 범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중위소득 60% 이하
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원 (교육급여)	지자체 1/2 교육청 1/2	교육청 전액 지원	교육청 전액 지원 (사회다양성전형과 일반전형의 경우 일반고 수준까지 지원)
학교운영지원비	교육청 지원 (96,800원 이내)			

○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 지원항목 및 자격

지원 항목	입학 전형	지원 자격		대상 확인
①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비	공통	법 정 저 소 득 자 격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NEIS > 학생복지 > 교육비지원 > '심사관리'
			2.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3. 법정차상위대상자				
4. 중위소득 50%이하				
② 수련활동비	기회균등 전형 입학자	소득인정액 기 준		
③ 교복비	공통	기타	5.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나 그 자녀	
④ 앨범비				

- 항목별 지원 단가

지원 항목	단가
1.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비	1인당 400,000원 이내 실비
2. 수련활동비	1인당 140,000원 이내 실비
3. 교복비(신입생)	사회통합전형 실시 학교 지원
4. 앨범비(3학년)	
	1인당 50,000원 이내 실비

※ 법정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은 학기 중 법정 저소득자격을 상실되더라도 해당 학년도 말까지 계속 지원

나. 사회통합전형 학생 맞춤형 적응 프로그램 운영

영역	프로그램	내용
학력 증진	세화 아카데미	•세화 아카데미 참가 대상으로 선발된 경우 비용 일체 지급
	맞춤형학습클리닉	•지도교사 맞춤형 학습지도
	방과후학교	•방과후학교 비용 전액 지원

영역	프로그램	내용
진로 진학 지도	맞춤형 진로지도	•전담 상담교사 운영 •대학별 전형 정보 상시 제공 •맞춤형 진로 진학 상담 실시 •진로진학 코칭 프로그램(진로심리코칭, 자기주도학습 코칭) 운영 •대학 및 관련 단체 주관 진로 체험 활동 안내
	진로 적성 검사	•진로 적성 검사, 학습 관련 검사 실시(비용 일체 제공)
학교 생활 적응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	•멘토(교사 또는 선배)를 지정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성적관리 코치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전문상담사와 연계한 면담 •자존감, 소외감 등 정서적 측면을 측정하는 검사를 실시하여 심리 검사 결과에 따른 맞춤형 상담 실시
비교과 활동	1인 1기	•1인 1체육 또는 예술 활동 시 수익자 부담 비용 지원
	봉사 체험의 날	•학교 계획에 의한 봉사·체험 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활동 시 필요한 경비 지원

※ 상기 프로그램은 교육청의 예산 지원과 본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위의 표에 제시된 지원은 '3'항의 지원 기준 및 지원범위 중 아래 대상 학생에 한하며 해당 프로그램 운영 당시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자세한 지원 사항은 본교 장학복지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다. 장학금 지원

영역	내용	
기회균등전형 입학생	연간 100만원(성적 제한 없음)	
사회다양성전형 입학생	연간 50만원(성적 제한 없음)	
입학 성적 우수 장학금	■ 본교 진단 평가 우수 학생 ○○명	
기회균등전형 장학금	건강인 장학금	장학복지위원회의 심의 및 추천을 받은 학생으로 매학기 심사를 거쳐 학습 장려금 지급
	교양인 장학금	장학복지위원회의 심의 및 추천을 받은 학생으로 매학기 심사를 거쳐 학습 장려금 지급
	실력인 장학금	1. 전 학기 대비 내신 석차 백분율이 10% 이상 지속적으로 향상된 학생으로 장학복지위원회의 심의 및 추천을 받은 자 2. 성적 향상률의 최초 기준은 진단평가에 두며, 전 학기 대비 향상률이 10% 이하일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봉사인 장학금	3학년 재학 시 대학 입시에 합격한 후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장학복지위원회의 심의 및 추천을 받은 자
일반 학생 장학금 (입학생 전원 대상)	■ 일주세화 장학금 매 학기 학년별 최우수 ○명 ■ 성적 우수 장학금 매 학기 학년별 성적 우수자 ○○명	
형제(쌍둥이) 장학금	2명 이상의 형제가 본교에 함께 재학할 경우 형과 동생에게 각각 학기별 50만원 지급	

※ 단, 장학금의 중복 수혜는 불가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진단평가가 실시되지 않을 경우 입학 성적 우수 장학금은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국어, 수학, 영어 점수의 총점 석차 순으로 지급함

※ 사회통합전형 입학자와 관련된 경제적 지원은 정책 및 법령의 변경 또는 교내 장학복지위원회 심의 및 추천에 따라 매년 갱신된다.

가.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7436호, 시행 2020.1.9.) 제2조 및 제7조에 의거하여 2021학년도 입학금과 수업료는 학교 홈페이지에 이미 공지되어 있음.

나. 이중 지원 금지

- 전기고 및 후기고 합격자(지원 후 불합격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는 본교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 이중 지원 금지는 서울특별시 관내 고등학교는 물론 타시도 소재 고등학교에도 적용됨.

다. 지원자는 하나의 전형에만 지원할 수 있음.

라.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의 기재 내용 중 사실이 아닌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마. 불법, 부정행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자는 입학한 후에도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함.

바. 입학원서에 기재된 개인 정보는 신입생 입학 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따라 수집·이용·제공됨.

사.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관련 내용을 참고하거나 진로진학상담부에 문의

<<입학관련 문의>

(우)06548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56-7

홈페이지 : www.sehwa.hs.kr/

입학문의 전용전화: 02-2054-5420

대표전화 ☎ 02) 594-8721 FAX 02) 599-3101

① 가구원 수 산정 시 유의사항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해당 학생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 및 2촌 이내의 형제·자매** [**※(외)조부, (외)조모 제외**]
- ※ 단,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 또는 미혼인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의 경우 이혼한 배우자를 가구원 수 산정 시 포함

②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 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에 부모 중 1명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제출)에 부모가 모두 있는데 건강보험증 사본에 학생만 있거나 부모 중 한 명만 있는 경우 반드시 부 또는 모의 건강보험료 금액을 확인하여 부모의 건강보험료 합산 (※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의 경우 친부와 친모 건강보험료 합산)
- 학생이 직장에 다니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도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을 확인하여 합산

③ 산정 및 적용

- (산정) 건강보험증에 부양자로 등록된 부모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합산한 금액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 소득이 없는 달(한시적으로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간 경우)은 기간에 산정하지 않음
 - 휴직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 시 휴직 전 납부된 건강보험료로 산정
 - ※ 입학 지원서 제출 당시 복직한 경우 복직 후 납부한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로 산정
- (적용)
 - ※ 부모가 각각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와 모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지역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다른 직장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직장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건강보험과 직장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혼합보험료 기준 적용**
- (사례)

아버지는 직장건강보험 부양자로 4만원 납부하고 어머니는 지역건강보험 부양자로 2만2천원 납부하는 4인가구의 경우 : 4만원(부)+2만2천원(모)⇒가구 건강보험료(혼합 6만2천원)

참고 자료 2

사회다양성 전형 지원 기준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60% 이하)

■ 근거

- 2020년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송부(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2492, 2019.12.12.)
- 교육부-시도교육청 고입업무 협의체 협의회 결과 알람(충청남도교육청 교육혁신과-4451, 2020.3.9.)
- 가구원수별 소득에 따른 재산세 연간 재산세 산출세액 제출(서울특별시 세무과-7770, 2020.3.31.)

■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60% 이하 증명

- 건강보험료 납입금(최근 6개월 평균액) 기준을 적용
 - ※ 2020년 4월 건강보험 연말정산금액은 합산에서 제외

■ 건강보험료 납입금 및 재산세 납부금액 확인 시, 부모 모두 확인하여 합산(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의 경우 이혼한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납입금 및 재산세 납부금액을 확인·합산하여 제도 도입 취지에 맞는 적격자 추천)

■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60% 건강보험료 및 재산세 납부금액 적용 기준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단위:원)			재산세납부금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160,546	160,865	162,883	538,050
3인	208,444	219,531	212,215	856,320
4인	253,956	274,444	260,770	1,193,760
5인	311,116	333,411	326,561	1,530,960
6인	368,580	393,349	402,261	1,868,400
7인	402,261	426,790	437,059	2,207,760
8인	471,545	495,914	519,517	2,546,880
9인	519,517	544,044	602,065	2,886,000
10인	602,065	617,910	767,816	3,225,360

※ 「2020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보건복지부, '19.12.) 및 서울특별시 재산세 납부금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산정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재산세 납부금액은 주택(아파트) 재산세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며,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임

(총재산세(주택 기준) = 재산세+도시지역분+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 재산세는 전국에 소유한 모든 주택(아파트)에 대한 납부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토지, 상가 등에 대한 재산세는 미포함

구분	순위	지정 대상자	비고
기회균등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법정차상위대상자로서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상위 자활 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 연금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로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가구의 구성원 	증명서 및 확인서 제출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교육비지원 대상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법정차상위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50% 및 60% 이하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학교장 추천
		○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보훈자 자녀
사회다양성전형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 및 제14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영재학교(서울과학고등학교), 과학계고(세종과학고등학교, 한성과학고등학교), 예술계고(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덕원예술고등학교,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선화예술고등학교), 일반고 중 예·체능계고(서울미술고등학교)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사회통합전형이 아닌 별도 전형계획에 의거 전체 모집 인원의 2~3% 범위에서 정원 외로 선발함 ○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의 거주자로서 도서벽지 중학교 졸업(예정)자 ○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 자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자녀 ○ 순직군경, 순직공무원, 순직교원 자녀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60% 이하 가정 자녀
	2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한부모 가정 자녀 ○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자녀 ○ 특수직업 종사자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미화원 자녀(시·도 또는 군·구 소속 미화원) - 군인(15년 이상 재직 중인 준부사관 이하) 자녀 - 경찰(15년 이상 재직 중인 경위 이하) 자녀 - 소방공무원(15년 이상 재직 중인 소방위 이하) 자녀 ○ 기타 학교에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로 신청한 유형 중 교육감이 사회통합전형 제도 도입의 원칙과 기준을 고려하여 승인한 자 	
보훈자 자녀전형 (정원 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교육지원대상자로 통보되거나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제출자)	학비 면제 대상

* 지원 당시 소속 중학교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

참고 자료 4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확인 증빙 서류

지원유형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공통	○ 주민등록등본 ○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동주민센터	
기 회 균 등 전 형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수급자증명서	구청, 동주민센터	
		○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구청, 동주민센터, 학교(교육청)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구청, 동주민센터	
	법 정 차 상 위 대 상 자	차상위자활대상자	○ 자활급여 대상자 확인서	구청, 동주민센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	○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구청, 동주민센터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 장애연금 대상자 확인서	구청, 동주민센터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 차상위계층 확인서	구청, 동주민센터
	기준중위 소득50% 이하 · 기준중위 소득60% 이하	기준중위소득50%이하	○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구청, 동주민센터, 학교(교육청)
		기준중위소득60% 이하	○ 교육비지원확인서	학교(교육청)
학 교 장 추 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 경제적 형편이 곤란함을 증빙하는 기타 제반 서류 -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내역서(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급여명세서, 병원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 등 -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가출, 연락두절 기타 가정형편으로 부모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장 추천서」 또는 「자기확인서」에 동 사실을 명기 - 어느 한 가지 서류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재산세 과세증명 등을 받아 종합적으로 판단		해당 증빙서류별 확인 가능한 곳	
보훈자 자녀 전형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대상자	○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관할 보훈지청	
사 회 다 양 성 전 형	공통 (가7월수별 중위소득 160% 이하)	지역건강보험료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 자료(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직장건강보험료, 혼합(지역+직장)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 자료(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 재산세(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1부 ※ 반드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전국)’으로 발급받아 제출(동주민센터 방문 발급, 온라인 발급 불가)	
	1순위	다문화가정 자녀	○ 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상세)	해당서류

지원유형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발급기관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통지서 사본(원본대조필) 1부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 아동보육시설 재원증명서 1부	
	도서·벽지의 중학교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 1부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의 자녀	○ 사실 관계 확인서(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등) 1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원본대조필) 1부 ※ 2019년7월1일 이전 발급 장애인 등록증: 장애 1~3급	
	순직군경, 순직공무원, 순직교원의 자녀	○ 순직군경, 순직공무원, 순직교원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2순위	한부모가정 자녀	○ 가족관계 증명서	해당서류 발급기관
	다자녀가정 (3자녀 이상) 자녀	○ 가족관계 증명서 ※ 단, 입양으로 인한 다자녀가정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로 제출	
	환경미화원의 자녀 (사도 또는 군구 소속 환경미화원)	○ 재직증명서 1부	
	군인 자녀 (준·부사관 이하)	○ 재직증명서 1부 ○ 15년 이상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	
	경찰 자녀 (경위 이하)		
	소방공무원 자녀 (소방위 이하)		
정원외 보호자 자녀 전형	국가 유공자 자녀 중 교육지원대상자	○ 국가보훈처에서 교육지원자로 지정하여 통보된 자는 추가 제출 서류 없음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통보 이후 지정된 경우)	관할 보훈지청

※ 증빙서류는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발급한 서류에 한함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은 영수증, 고지서, 납부확인서 중 택 1

※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함

대상자	근거	증명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 	독립유공자(유족) 확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3호 ~ 제18호, 제73조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지급대상자) 및 그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치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18민주유공자 및 그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5·18민주유공자 (유족) 확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 	특수임무유공자 (유족)확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제4호 	보훈보상대상자 (유족)확인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교육지원대상자로 통보되거나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제출자)는 정원의 보훈자 자녀 전형으로 별개 사항임

[붙임3]

2021학년도 고입 기회균등전형 중 '학교장 추천자' 유형

학교장 추천서

발급 번호 2020 -

성명		성별	남	생년월일	
출신학교	() 중학교 ()년 2월 (졸업 / 졸업예정)				
지원유형	기회균등전형(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 추천)				
증빙 서류					
추천 사유(※ 학교장 추천 요건만 기재할 것, 3쪽 참조)					
2021년 월 일					
() 중학교장 (직인)					
세화고등학교장 귀하					

※ 발급 번호 : 중학교별로 추천서를 발급한 연번호 기재

※ 중학교에서 '2021학년도 사회통합전형 추진계획'에 따라 대상자 유형, 증빙서류, 추천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등 심의(자문) 절차를 거쳐 추천 대상으로 확정된 학생에 한해 추천서 발급
(지원 고등학교에 '학교장 확인서'와 '학교장 추천서', 증빙 자료 모두 제출)

[붙임4]

입학원서 접수증	
접수번호	
성 명	
<p>2021학년도 세화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원서를 위와 같이 접수합니다.</p> <p>2020년 12월 일</p> <p>세화고등학교장</p>	

절
취
선

서류 접수 현황 (학교 보관용)	
접수번호	
성 명	
출신중학교	
전형 구분	
사회통합 유형	
연 락 처	본인 휴대전화
	보호자 휴대전화
	출신중학교
제출 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학원서 1부 2. 3. 4. 5. 6. 7. 8. 9. 10. <p>※ 2. ~ 10.에는 추가로 제출한 서류를 직접 기재하세요.</p>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본 입학원서에 기재된 지원자의 개인정보는 신입생 입학 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제공됩니다.

1. (개인정보 처리의 법령상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제82조, 제84조, 제98조, 제106조의3 및 본교의 입학 전형 실시 계획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 (정보주체의 권리)

지원자는 자신이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및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열람·처리·정지·정정·삭제·파기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 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 수집 항목)

입학 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지원자 및 보호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 증명사진, 주소, 전화번호, 학력, 계좌번호 등 제출 서류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한 지원자의 개인정보는 원서 접수, 지원 자격·지원 결격 사유 확인, 지원자 본인 확인, 합격자 명부 관리, 합격증 발급, 통계 자료 산출 등 입학 관리 업무를 위한 정보로 이용됩니다.

5. (개인정보 제공)

수집한 개인정보는 지원 자격·지원 결격 사유 조회 등을 위하여 법령상 근거에 따라 지원자가 졸업한 중학교 등 관련된 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입학 관리 업무를 계속하는 동안 보유·이용할 수 있으며, 입학 관리 업무 완료 후 본인의 삭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모두 삭제됩니다.

7.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거부)

지원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 결격 사유 조회 등 입학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본 입학원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2021. . .

지원자 성명 (서명)

보호자 성명 (서명)

세화고등학교장 귀하